

의안
번호

1232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의 원 : 김상현 · 구점득 · 김영록 · 김이근 · 남재욱
박강우 · 박선애 · 박해정 · 백승규 · 서명일
이정희 · 이해련 · 전홍표 · 최은하 ·
홍용채 의원(15명)

1. 제안이유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기반 구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 and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
· 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
· 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

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분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化粧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化粧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0. “化粧품제조업”이란 化粧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化粧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化粧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化粧품판매업”이란 맞춤형化粧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의사업법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김상현 의원)

의사업법담당관-804(2026. 2. 3.)호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불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개정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부 서 검 토 의 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 상 현 의 원	○ 검토부서: 미래신산업과 ○ 관련법령 저촉 여부: 해당없음 ○ 종합의견: 불임 검토보고서 참조

- 불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부.
2. 불임 서류 각 1부. 끝.

창 원 시



주무관 홍현정 의회협력팀장 박영수 정책기획관 전결 2026. 2. 10.
김태호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2270 (2026. 2. 10.) 접수 의사업법담당관-1003 (2026. 2. 10.)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hong3582@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시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검토 보고

❖ 김상현 시의원 발의예정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I | 발의 개요

1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발 의 자 : 김상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상정시기 : 제150회 임시회(2026. 3월 예정)
- 제안이유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2 주요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 자치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목적 규정, 해당 조례안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정의 규정, 관련 시책 수립·시행 및 필요한 지원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 ① 창업·경영 지원/기술개발·연구 촉진 ② 우수 브랜드 육성/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③ 집적단지 및 체험 공간 조성 등
안) 제5조 ~ 제9조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전발생 시마다, 15명 이내의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 필요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 가능함을 규정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II | 검토 내용

1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상위법

: 관련 상위법으로는 「화장품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에서는 행정절차, 규제와 안전기준 등을 주로 다룸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항제3호차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규정

⇒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전 부서 의견 조회

○ 조회기간 : 2025. 10. 28. ~ 10. 31.

○ 회신의견

부서명	소관업무	의견
예산 담당관	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로 정확한 재정부담 검토 불가 ■ 제4조(지원사업) 근거 신규(보조)사업 추진 시 市 재정부담 가중 예상 ■ 중복사업 지양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부서와 협의 후 신중히 추진 필요
정책 기획관	위원회	■ 뷰티제조산업의 브랜드 육성, 국내외 마케팅, 기반시설 구축 등의 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뷰티제조산업 관련 정기적 시책 추진계획 및 향후 지원사업 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안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당장의 위원회 설치·운영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만, 향후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위원회 필요성 증가를 대비하여, 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임의 설치 위원회로 규정하여, 필요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함 ⇒ 해당의견 수렴하여 의원 협의 완료 및 조례안에 반영하여 진행

3 조례안 검토 의견 : 전부수용

○ 해당 조례안은 뷰티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조문이 없으므로 수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재정부담 : 붙임 2(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Ⅲ 종합의견

- 우리시 뷰티산업은 이·미용업 등 자영업 중심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고 뷰티제조분야는 저변이 취약하여 단기간에 하이테크산업으로서 육성은 어려운 실정임
- 첨단 뷰티기기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필요하나 본 조례 2조 뷰티제조산업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뷰티산업의 산업화 측면에서 서비스 분야는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비스 분야는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이·미용업 지원 및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육성방안을 마련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 뷰티제조산업 관련 파생되는 뷰티 콘텐츠 분야 등 관련 업무도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부서 간 협력 강화 및 사무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시에는 부서별 업무추진 및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료됨

(뷰티제조산업 육성)

- 첨단뷰티기기제조, 뷰티테크기업 육성 : 미래신산업과

(뷰티 관련 콘텐츠 육성)

- 뷰티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및 수출 지원 : 투자유치단
- 뷰티관련 지역대학 연계 인재양성 : 평생교육과
- 진해군항제 등 지역행사 연계 뷰티산업 지원행사 : 관광과
- k-pop월드페스티벌 등 연계 k-뷰티 활성화 : 문화예술과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 지원)

- 이·미용업 지원 및 위생업소 관리 :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및 관련법령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참고 1 타지자체 조례 현황

○ 30개 자치단체(광역17, 기초13)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기준)

연번	법령명	제정일	광역	기초
1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15.11.18.	√	
2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15.12.24.	√	
3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6.06.03.		√
4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6.08.04.	√	
5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07.13.	√	
6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07.18.	√	
7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9.10.30.	√	
8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	'21.07.08.	√	
9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	'21.09.29.	√	
10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21.11.24.		√
11	광주광역시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 조례	'21.12.30.		√
12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1.12.30.	√	
13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08.04.	√	
14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2.08.04.		√
15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22.12.27.		√
16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2.12.30.	√	
17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	'23.02.28.	√	
18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3.03.31.		√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23.07.14.		√
20	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23.07.25.		√
21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3.10.04.		√
22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3.12.28.		√
23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24.02.16.	√	
24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24.06.26.	√	
2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24.06.28.	√	
26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4.10.22.		√
27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24.12.31.	√	
28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5.04.15.		√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25.06.27.		√
30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25.11.07.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관련조항	재정수반요인
제4조(지원사업)	•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 주체, 대상자 등이 결정되지 않아,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작성자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김상현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6. 2. 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의원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김주연

입법지원팀장

장설민

★의사기록팀

장

반혜정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2. 3.

류효중

협조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시행 의사입법담당관-804

(2026. 2. 3.)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5

팩스번호 055-225-4743

/ jy0810@korea.kr

/ 대국민 공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의 원: 김상현 의원

찬 성 의 원:

1. 제안이유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기반 구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 and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
· 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
· 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